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채익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604

발의연월일: 2021. 4. 20.

발 의 자:이채익・백종헌・정희용

장제원 · 김기현 · 이명수

권명호 · 송재호 · 정동만

김 웅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2조는 '학교폭력'의 범주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포괄하고, '사이버 따돌림'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으나, 다양한 방법 으로 나타날 수 있는 '사이버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고 있음.

2020년 코로나19 이후 원격수업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 사이버 학교폭력 피해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현행법 체계가 교육현장에서 벌어지는 다양하고 새로운 유형의 사이버 학교폭력을 모두 포함하지 못하므로, 학생과 교원, 학부모등이 실태조사와 사안조사 과정에서 사이버 학교폭력에 대해 모호한 개념을 가진 상태에서 응답이나 조사가 이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이버 학교폭력'을 별도로 정의하고, 예방교육 및 사안 처리

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교육부장관이 마련할 수 있도록 하며, 사이버학교폭력에 대한 실태조사와 예방교육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사이버 학교폭력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 및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의2·제6조의2·제11조제8항 후단 및 제15조제2항 후단 신설, 제2조제1호·제20조의3).

법률 제 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를 "심부름,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학교폭력 등에 의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제1호의3 및 제1호의4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사이버 학교폭력"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성폭력 및 사이버 따돌림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사이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지원 등) 교육부장관은 사이 버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지원을 위하여 교육 및 사안처리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학교의 장이 활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1조제8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실태조사의 내용에는 사이버 학교폭력에 관한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제15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사이버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교육이 포함되어 야 한다.

제20조의3의 제목 중 "정보통신망에 의한"을 "사이버"로 하고, 같은 조 중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한"을 "사이버 학교폭력에 의한"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혂 행 개 정 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 1. -----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 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 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학교 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 폭력 등에 의하여-----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 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 다. <신 설> 1의2. "사이버 학교폭력"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 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성폭 력 및 사이버 따돌림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 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1의2. • 1의3. (생략)

2. ~ 5. (생략) <신 설>

제11조(교육감의 임무) ① ~ ⑦ | 제11조(교육감의 임무) ① ~ ⑦ (생 략)

⑧ 교육감은 학교폭력의 실태 를 파악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효율적인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 를 공표하여야 한다. <후단 신 설>

⑨ ~ ⑫ (생 략)

제15조(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① 제15조(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① (생략)

②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의 예 ② ---

를 말한다.

1의3. • 1의4. (현행 제1호의2 및 제1호의3과 같음)

2. ~ 5. (현행과 같음)

제6조의2(사이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지원 등) 교육부장관 은 사이버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지원을 위하여 교육 및 사안처리 등에 관한 가이드라 인을 마련하고, 이를 학교의 장 이 활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현행과 같음)

8
태조사의 내용에는 사이버 학교
폭력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⑨ ~ ⑫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방 및 대책 등을 위한 교직원 및 학부모에 대한 교육을 학기 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 다. <<u>후단 신설></u>

③ ~ ⑤ (생 략)

제20조의3(정보통신망에 의한 학 교폭력 등)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한 신체상·정신상 피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이 경우 사이버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교육이 포
	함되어야 한다.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	20조의3(<u>사이버</u> 학교폭력 등)
	사이버 학교폭력에 의한